

배 포 용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발기인대회 보도 참고자료

- ☐ 일시 : 2017. 11. 07(화) 14:00
- ☐ 장소 : 세종문화예술회관 예인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 추진위원회

회 순

I . 발기인 대회

1. 개 회
2. 참석 발기인 소개
3. 인사말(재단설립추진위원장)
4. 경과 보고
5. 발기인 선언문 채택
6. 기념촬영

II . 발기인 총회

1. 보고·검토사항
2. 심의·의결안건
3. 기타토의

III . 폐 회

발기인 선언문

공공상생연대기금 발기인 선언문

오늘 공공상생연대기금의 발기인대회를 맞이하여, 우리는 한국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소중한 힘을 만들어낸 공공·금융산업의 40만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폭압적인 성과연봉제 탄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단결과 연대에 기초한 당당한 투쟁으로 공공성을 말살시킬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막아냈다.

무엇보다 공공·금융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이 부당하게 지급한 성과급을 당당히 거부하고, 오히려 이를 한국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 제안으로 부당이익의 사회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그 재원으로 공익재단 설립 방안이 추진돼 왔다. 따라서 오늘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시작은 전적으로 이들의 헌신에 빚지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대담한 결단은 연대기금의 역사에서 반드시 기억될 것이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한국사회가 공공성을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작동기체로서 대면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간 공공성의 확장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았다. 공공·금융노동자뿐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 역시 승자독식의 경쟁지상주의 일변도로 치닫는 한국사회에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냈고 변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실의 벽 또한 높았다.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부 아래서,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을 밥그릇 싸움으로 치환하는 여론 환경 속에서 공공성은 그 본질적 의미를 잃은 채 먼 미래에나 현실화될 추상적인 목표로만 존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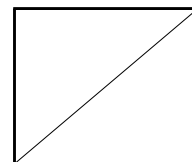
오늘 발기인대회는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시작이다. 노동자들의 제안과 출연에서 시작된 공익재단 설립은 공공기관 경영진과 시민사회의 뜻있는 인사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당위성과 현실성을 획득하며 현실 세계에 체현되었다. 노·사·공이 함께 하는 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공·금융노동자들의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오랜 꿈을 현실로 이뤄내고, 공공기관이 진정한 시민의 손과 발로 거듭나 사랑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가 공공성의 가치를 제대로 마주하고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첫 걸음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공상생연대기금에 부여된 시대적 역할과 소명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완수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을 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연대로 우리 안의 사회적 차별부터 해소해 나가고, 취약·소외계층과의 사회적 연대로 한국사회의 경쟁지상주의를 허물어 나가며, 최종적으로는 사회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한국사회가 모두 함께 공존·공생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7. 11. 7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 발기인 일동

보고·검토 사항



의안번호	제 00 호	보 고 안 건
발기인 총회 연 월 일	2017. 11. 07. (제 1 차)	

재단 설립 추진경과 보고

제 출 자	집행위원장 한창규
제출년월일	2017. 11. 07.

재단 설립 추진경과 보고

① 추진 배경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강제 도입

- (2016.01.28.)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정책 일방 발표
- (2016.02.26.)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을 위한 “경영평가 가점 부여 및 추가 성과급 지급방안” 제시
※ 추가 성과급 지급 규모 : 약 1,600억원

■ 성과연봉제의 강제 도입 저지 투쟁

- (총파업투쟁) 철도공사노조의 74일 사상 최장기 파업, 기재부 앞 68일 노숙 농성 등 성과연봉제 분쇄를 위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총파업과 투쟁 전개
- (법률투쟁) 성과연봉제의 강제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탈법 행위에 대하여 대규모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집단 법률 소송 진행
※ 법률지원단 구성 : 한국노총 법률원, 민주노총 법률원, 민변
- (대선투쟁) 촛불집회 및 조기대선의 적극적 결합을 통하여 당시 문재인 후보를 포함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협약을 추진 성과연봉제의 폐기를 약속 받음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기 및 추가 성과급의 공익목적 활용 제안

- (2017.06.15.) 공식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 결정에 따른 양대노총 공대위 입장 발표
※ 공대위 제안 : 추가 성과급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 함
- (2017.06.16.) 공운위 의결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정책 공식 폐기
※ 기 지급된 추가 성과급의 반납 여부는 노사 자율로 결정토록 함

② 재단 설립 추진경과

■ 공익재단 설립 추진 방향 설정 및 노정 실무협의

- (2017.08.11.) 공대위의 공식제안에 대하여 정부측은 지속적인 공익목적 달성과 사회적 연대차원에서 공익재단 설립이 바람직 할 것 이라는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 2017년도 제16차 공대위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 함
- (2017.08.23.) 이후, 공대위에서 마련한 재단의 사업계획 및 정관에 대한 법률 검토 및 행정 절차 지도를 위하여 수차례 노·정 실무협의 진행

■ 재단 설립 추진 토론회 실시

- (2017.09.11.) 사회적 연대의 공론화를 위하여 공익재단의 설립 필요성과 재단의 역할과 관련한 “공공상생 연대기금 설립추진 대토론회” 라는 제목으로 공개 토론회 실시
 - ※ 일시 및 장소 : 9월 11일 / 여의도 켄싱턴호텔
 - ※ 토론회 후원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 ※ 발제 :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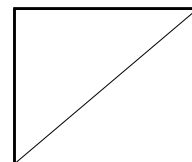
■ 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

- (2017.10.16.) 본격적인 재단 설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의 재원확보 및 각종 행정절차 준비 시작
 - ※ 일시 및 장소 : 9월 16일 / 은행연합회
 - ※ 추진위원회 : 이병훈 중앙대 교수 외 15인

③ 향후 주요 일정(예정)

- (11월 8일) 공익재단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
- (11월 말) 재단 출범

심학의결 사항



의안번호	제 00 호	의 결 안 건
발기인 총회 연 월 일	2017. 11. 07. (제 1 차)	

재단 설립 발기인 대표 선출(안)

제 출 자	집행위원장 한창규
제출년월일	2017. 11. 07.

재단 설립 발기인 대표 선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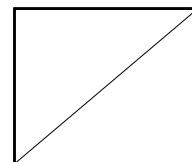
① 개 요

-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설립에 뜻을 같이하고 재단을 대표하여 재단 설립을 추진할 발기인 대표를 선출코자 함

② 발기인 대표 구성(안)

- (발기인 대표 인원)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와 관련 법률에 따라 노동계와 사용자,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16인(이사:15인, 감사:2인 중 1인[1인은 주무관청에서 임명])으로 구성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제1항 :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발기인 대표) 기존 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 전원을 발기인 대표로 제안

구 분	이 름	직 책
노동계 대표	조 상 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허 권	금융노조 위원장
	박 해 철	공공노련 위원장
	이 인 상	공공연맹 위원장
	유 지 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김 대 업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위원장
사용자 대표	이 학 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명 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문 창 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 태 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공익 대표	이 병 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노 광 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장 지 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 용 섭	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원장
	신 영 철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박 동 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의안번호	제 00 호	의 결 안 건
발기인 총회 연 월 일	2017. 11. 07. (제 1 차)	

재단 설립취지서(안)

제 출 자	집행위원장 한창규
제출년월일	2017. 11. 07.

재단 설립취지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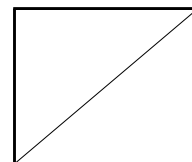
설 립 취 지 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공기관 노동자 및 사용자들의 자발적 출연과 참여를 통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사회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지에 따른 인센티브 환수 및 반납금액과 공공기관 노동자 및 사용자들의 자발적 출연을 재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한다.

1.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2. 청년 일자리·취업 지원사업
3. 장학사업
4. 정책·연구 개발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자발성을 활용하고, 비정규직 및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한다.



의안번호	제 00 호	의 결 안 건
발기인 총회 연 월 일	2017. 11. 07. (제 1 차)	

재단 정관(안)

제 출 자	집행위원장 한창규
제출년월일	2017. 11. 07.

재단 정관(안)

1 개 요

- (명칭)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약칭 : 공공연대기금]
- (설립목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사회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함
- (주무관청) 고용노동부

2 정관 주요내용

■ 재단의 운영 구조

구 분	역 활	비 고
이사회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비상근
집행위원회	이사회 안건 사전 심의, 사무국 관리 및 운영	비상근
사무국	실무 집행	상근

■ 정관 관련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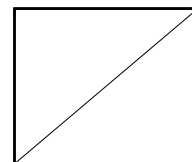
- (사업) 비정규직 처우개선 위한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취업 지원사업, 장학사업, 정책·연구 개발사업, 기타 사업
- (주요재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따른 기 지급된 추가 성과급 환수 및 반납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함
- (임원구성)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되 이사는 15인, 감사는 2인을 둔다

구 분	구 성	임 기	비 고
이사	- 공대위 대표자 : 5인(당연직) - 사용자측 대표자 : 4인(당연직) - 공익 대표자 : 6인	3년 (연임가능)	비상근 무보수
감사	- 공대위 추천 : 1인 - 주무관청(고용노동부) 추천 : 1인	2년 (연임가능)	비상근 무보수
이사장	공익 대표자 이사 중 호선으로 결정		

○ (집행위원회 및 사무국) 집행위원 11인과 사무국에 필요인원을 둔다

구 분	구 성	임 기	비 고
집행위원회	- 공대위 추천 : 5인 - 사용자 추천 : 4인 - 공익이사 추천 : 2인	이사회에서 임·면	비상근 무보수
집행위원장	공대위 집행위원 중 이사회에서 지명	이사회에서 임·면	비상근 무보수
사무국	이사회 의결로 별도 규정으로 정함 ※ 출범 초기 : 3~5인으로 구성 예정	-	상근

④ 재단 정관(안) : 별첨 참고



의안번호	제 00 호	의 결 안 건
발기인 총회 연 월 일	2017. 11. 07. (제 1 차)	

임원 및 이사장 선임(안)

제 출 자	집행위원장 한창규
제출년월일	2017. 11. 07.

임원 및 이사장 선임(안)

1 개요

- 재단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재단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이사장을 선출코자 함

2 임원 선임(안)

■ 이사 선임

- (이사의 구성) 정관 제5조(종류 및 인원) 및 제6조(선임)의 규정에 따라 재단의 이사는 15인으로 구성

구성 및 인원	임 기	비 고
- 노동계 대표자 : 5인(당연직) - 사용자측 대표자 : 4인(당연직) - 공익 대표자 : 6인	3년 (연임가능)	비상근 무보수

- (이사 후보) 재단의 발기인 대표 중 15인을 재단의 이사로 제안 함

구 분	이 름	직 책
노동계 대표	조 상 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허 권	금융노조 위원장
	박 해 철	공공노련 위원장
	이 인 상	공공연맹 위원장
	유 지 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사용자 대표	이 학 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 명 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문 창 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 태 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공익 대표	이 병 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노 광 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장 지 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 용 섭	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원장
	신 영 철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박 동 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 감사 선임

- (감사의 구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및 시행령 제13조(주무관청의 감사추천)의 규정과 재단 정관 제5조(종류 및 인원) 및 제6조(선임)의 규정에 따라
 - 재단의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하되 그 중 1인은 설립허가시 주무관청에서 추천

구성 및 인원	임 기	비 고
- 노동계 추천 : 1인 - 주무관청(고용노동부) 추천 : 1인	2년 (연임가능)	비상근 무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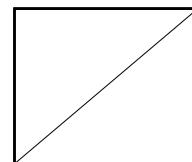
- (감사 후보) 재단의 발기인 대표 중 이사후보를 제외한 1인을 재단의 감사로 제안 함

구 분	이 름	직 책
노동계 추천	김 대 업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위원장
정부 추천 (노동부)	-	설립허가시 주무관청에서 추천 예정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3조)

③ 이사장 선출(안)

- (관련규정) 재단 정관 제6조(선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의 이사장은 공익대표 이사 6인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
- (이사장 후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대표 이사 6인 중에서 재단의 이사장을 호선할 것을 제안 함

구 분	이 름	직 책
공익대표 이사	이 병 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노 광 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장 지 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 용 섭	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원장
	신 영 철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박 동 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의안번호	제 00 호	의 결 안 건
발기인 총회 연 월 일	2017. 11. 07. (제 1 차)	

출연재산(안)

제 출 자	집행위원장 한창규
제출년월일	2017. 11. 07.

출연재산(안)

① 개 요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설립허가신청)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재단설립 추진위원회 공식 임시계좌에 출연된 재원에 대하여 재단의 설립허가 신청을 위하여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출연 재산과 출연재산의 세부 목록을 확정코자 함

② 재단설립 추진위원회 출연금액

- (임시계좌 출연금액) ₩3,141,859,444원(2017.11.06. 11:00 기준)
- (향후 출연계획) 추진위원회 임시계좌를 재단의 공식 출연계좌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출연 진행
 - ※ 임시계좌 : 기업은행 001-583920-01-017 / 예금주 : 이병훈(공공연대기금추진위원회)
- (통장사본)

예금주(Name) **이병훈** 님
 공공연대기금추진위원회_이병훈
 계좌번호 001-583920-01-017
 (Account No.)
 예금종류 **보통예금**

중소기업은행

통장일련번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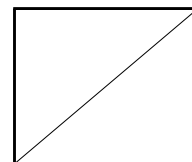
신규일 2017년 10월 25일
 발행일 2017년 10월 25일
 신규점 영업부 ☎ 02 729 6114
 발행점 영업부 ☎ 02 729 6114

BC 결제	인터넷	텔레 뱅킹	계좌 이체	지로 이체	CD 카드	i-ONE 뱅크

인터넷뱅킹
www.ibk.co.kr

i-ONE뱅크

텔레뱅킹



의안번호	제 00 호	의 결 안 건
발기인 총회 연 월 일	2017. 11. 07. (제 1 차)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제 출 자	집행위원장 한창규
제출년월일	2017. 11. 0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① 사업계획(안) 주요내용

■ 사업목표 및 방향

-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 사회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공공 노동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이를 위해 공공상생연대기금 사업의 기본 방향은 ①사회적 격차 해소(희망사업), ② 사회적 책임과 연대(꿈나누기사업), ③ 기타 사회 공공성 강화(울타리사업)로 설정

■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 공공상생연대기금의 당기 사업계획은 당기 1월까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정관 14조 4항에 의거 재단법인에 재원을 출연한기관의 노·사 및 시민사회 등 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재원을 출연한 기관의 노·사, 시민사회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함.

■ 연도별 활동목표 및 내용

- (17.10~18.1월) 사업기반 마련
 - － 설립신고 등 행정절차 완료, 자산운영기준·회계기준·감사기준 등 운영시스템 구축
 - － 사업계획 이사회 의결 후 재원을 출연한 기관의 노·사 및 시민사회 등 관계자에 대한 보고대회 시행(1월)
- (18.2~18.12월) 사회적 토대 마련
 - － 기본사업과 연도별 특별사업의 단계별 착수를 통해 기금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재단법인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마련
- (19.1~19.12월) 사회적 참여 확산
 - － 전기 결산 및 당기 사업계획 이사회 의결 후 재원을 출연한 기관의 노·사 및 시민사회 등 관계자에 대한 보고대회 시행('19.1월)

- 19년 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실천계획 응모전과 국민공모전 시행 등을 통해 재단 법인의 확고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

■ 사업개요

- ◇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사업은 기본사업과 특별사업을 구분하여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함께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
- ◇ 기본사업은 사회적 격차해소를 위한 희망사업,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위한 꿈나누기 사업,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울타리사업으로, 특별사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편성
- ◇ 특별사업으로 공공기관 실천계획 응모전과 국민 공모전 등을 시행하여 공공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추정) 수혜인원/소요예산
기 본 사 업	희 망 사 업	희망사다리	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 본인 장학사업	500명 / 20억
		희망새싹	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 자녀 장학사업	1,000명 / 68억
		희망어울림학습방	다른 사업 수혜자의 재능기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 등의 자녀 대상 학습방 운영 (각 지역 공공기관 노사협조로 공간 마련, 선생님 봉사료 지급, 년내 순차적으로 50호 개소 추진)	1,500명 / 12.7억
		희망충전	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 휴식을 위한 휴양시설 제공	차기검토
	꿈 나 누 기 사 업	꿈&일터 매칭	청년구직자와 각 공공기관을 연결한 방학기간 (2개월) 직장체험 연수프로그램 운영 (선호기관에서 1개월, 비선호기관에서 1개월 꿈과 일터를 매칭할 수 있는 현장체험 시행)	1,000명 / 32.4억
		꿈나누기 연구사업	기존 일자리 정책의 오류와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사업	1.2억
	울 타 리 사 업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포럼 운영	정례적 포럼 운영을 통해 사회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연구 진행	2억
		혁신도시 순회 노동법 교육·토론회	비정규직·정규직전환대상자·저임금노동자 대상 노동법 교육 및 도시락토론회	1억
		혁신도시 지역소통 인문학 강좌·좌담회	지역주민, 대학생, 공공노동자, 개별사업장 노동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인문학 강좌 및 도시락 좌담회	1억
		혁신도시 노동복지연대센터	혁신도시, 인근노동자, 지역주민 대상 무료 노무·법률 상담 등	차기검토
특 별 사 업	공공기관 실천계획 응모전 모범사례 지원	사회적 격차 해소, 사회적 책임과 연대 등을 위한 공공기관별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실천계획 응모전을 시행, 모범사례의 사업비일부를 지원	50억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사업시행	차별해소, 처우개선, 일자리창출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작에 대한 사업시행	15.1억	

■ 연도별 재원확충 방안

○ (17.10~18.1월) 재단설립에 따른 출연 촉진

- 발기인대회를 계기로 17년내 8백억, 18년초 10백억(누적) 이상의 출연을 추진

○ (18.2~18.12월) 성과연봉제의 완전한 폐기에 따른 추가 출연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의거한 정부의 성과연봉제 정책의 완전한 폐기로 추가 성과급의 환수 또는 반납에 따른 재단으로의 출연을 촉진하고,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된 행정지침, 경영평가 등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사회적 책임·연대에 대한 공공부문의 관심을 제고하여 출연을 촉진함으로써 18년말 16백억원(누적) 규모의 재원 확보 추진

○ (19.1~19.12월) 사회 공공성 강화에 따른 신규 출연 활성화

- 「노동이사제」 법제화, 「사회적 가치 기본법」 입법화 등에 따른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기반으로 공공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하여 재단법인으로의 신규 출연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 각 공공기관의 개별 사회공헌활동과 재단법인의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추진

② 수입·지출 예산(안) 주요내용

○ (수입) 17년말 80,000,000 / 18년초 100,100,000/ 18년말 162,200,000천원 (누적금액)

○ (지출) 17년말 271,488 / 18년말 20,774,310천원 (中 18년 사업비는 20,433,375천원)

별첨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정관(안)

2017. 11. 07.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재단은 공공기관 노동자 및 사용자들의 자발적 출연과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의 폐지에 따른 인센티브 환수 및 반납 금액 등을 활용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사회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재단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약칭:공공연대기금](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본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2. 청년 일자리·취업 지원사업
3. 장학사업
4. 정책·연구 개발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 목적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기부를 받을 수 있다. 단,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기타 사회적 지위나 재단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제2장 임 원

제5조(종류 및 정원) ①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하, 감사는 2인을 둔다.

② 이사 중 1인을 이사장으로 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모두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선임)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으로 한다.

1.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대표자 각 1인
2. 중앙공공기관 사용자측 대표자 3인과 지방공공기관 사용자측 대표자 1인
3.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관련 지식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인

② 이사장은 제1항 제3호의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협의로 추천한 1인
2.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1인

④ 이사와 감사는 이를 겸임할 수 없다.

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⑥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선임된 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7조(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6조 제5항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당연직 이사는 본인 소속 조직에서 임기가 종료될 경우 재단 이사의 임기 또한 자동 종료한다.

⑥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하는 일
6. 이사가 재단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이사의 직무집행의 유지(留止)를 청구하는 일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 또는 공석중인 경우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권한 대행자를 제6조 제1항 제3호의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임시이사회를 통해 권한 대행자를 지명하기 전까지는 제6조 제1항 제3호의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0조(보수) ①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
- 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감사는 이사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2조(퇴임 및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3장 이사회

제13조(구성) ① 이사회는 재단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소집)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3. 제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장은 제2항의 이사회와는 별도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단에 재원을 출연한 기관의 노·사 및 시민사회 등 관계자들에게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정기적으로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소집 7일 전까지 회의 개최목적, 안건,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뜻을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 소집권자를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집행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의 기본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
7.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 각종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이 정관에 의한 출연, 기부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분사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치는 안건

제1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회는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의사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17조(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신이 임원의 취임 및 해임 등의 대상이 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재단과 해당 임원의 이해가 관계될 때
3. 임원이 소속된 법인·단체의 사업을 본 재단이 지원하는 경우

제18조(회의록)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 이사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목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재적 이사 수 및 성명
3. 출석한 이사 수 및 성명
4.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5. 의사경위 개요 및 그 결과
6. 의사록 서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② 의사록에는 의장과 해당 회의에 출석한 이사 중 1인 이상 및 감사 1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집행위원회 및 사무조직

제19조(집행위원회의 구성) ① 재단은 제4조 제1항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추진·운영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집행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운영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소속 상근간부 각 1인
 2. 제6조 제1항 제2호의 이사가 각각 추천하는 소속 공공기관 직원 각 1인
 3. 제6조 제1항 제3호의 이사들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관련 지식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2인
- ② 집행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제1항 제1호의 집행위원 중 1인을 집행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제20조(집행위원회의 직무) 집행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심의
2.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사업의 관리 및 집행
3. 사무국의 관리 및 운영

제21조(사무국의 구성) ① 재단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하부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현금, 토지, 건물 등(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제23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④ 재단의 재산은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하며,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운영 자원) ① 재단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지에 따른 인센티브 환수 및 반납 금액
- 2.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 기부금
- 3.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 4. 사업수익금
- 5. 전년도 이월금
- 6. 그 밖의 수익금

- ② 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단체의 출연이나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경비지출)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그 밖에 보통재산으로 지출한다.

제26조(회계의 구분) ① 재단은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모든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재단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27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수익금의 처리) 모금 및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 등 수익금은 이사나 출연자 등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또는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보고서, 지출결산서, 주요재산 증감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등으로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회계연도 중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예산 이외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잉여금) 재단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1조(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① 감사는 연1회 이상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규정 등의 제정) 재단의 운영상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시킨다.

제36조(공고 및 방법) 재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그 밖에 이사회에서 공공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37조(준용규정) 이 재단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8조(출연액 및 기부금의 공개) 재단은 연간 출연액 및 기부금의 활용실적을 재단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재단의 설립 이전에 임원 선임·설립등기 등 재단 설립을 위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가 한 것으로 본다.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